

의안번호	2202646
의 퇴 인	구자근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계번호	24F26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&D 및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
세액공제 도입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(20%)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3조 279억원, 2030년 3조 6,51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,059억원(연평균 3조 3,4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적용(안 제10조제1항)	-7,085	-7,531	-7,976	-8,430	-8,885	-39,907	-7,981
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적용(안 제24조제1항제2호)	-23,194	-24,354	-25,426	-26,544	-27,633	-127,151	-25,430
계	-30,279	-31,885	-33,401	-34,975	-36,518	-167,059	-33,412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 － 현행 공제 외에 연구·인력개발비의 20%의 추가적인 세액공제	
2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 － 현행 공제 외에 투자금액의 20%의 추가적인 세액공제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24조제1항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되어 당해연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전제할 경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
 - 2025~2029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6~2030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~2030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‘R&D 세액공제’)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추계기간 중 해당 기술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고 가정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가정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- 향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R&D 및 설비투자 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2023년 신고기준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

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2023년 신고기준 법인의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신고 비중은 다음과 같음
 - R&D 세액공제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(%): (중소기업) 26.6, (일반법인) 7.7
 -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(%): (중소기업) 47.8, (일반법인) 14.9
- ※ 단, 수도권은 서울·경기·인천,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으로 구분

- 향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지표 전망(2024.10.)¹⁾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 -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및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&D 세액공제에 추가공제 적용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 -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 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 - ※ ‘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3 (한도 10%)’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 ²⁾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 ¹⁾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‘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’로 계산함

□ (공제실적) 2023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4조 6,302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 수준

- 2023년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(법인세)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852	2,886	6,023	23,760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66	255	8,971	9,492
국가전략기술 R&D	32	9	11,927	11,968
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으로 2023년 대비 34.6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공제율 변화를 반영하고, 향후

공제실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(2024.10.)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, 향후 동 기술의 R&D 세액공제 공제율은 일반기술 기준으로 적용
 -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공제율 변화(%):
 - (신성장·원천기술) 중소기업 30 → 25, 중견기업 20 → 8, 대기업 20 → 2
 - 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40 → 25, 중견기업 30 → 8, 대기업 30 → 2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4] 향후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10,987	11,679	12,368	13,073	13,779
중견기업	2,226	2,366	2,506	2,649	2,792
대기업	5,616	5,970	6,322	6,682	7,043
계	18,829	20,015	21,196	22,404	23,614
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 전망(t-1)	6.0	6.3	5.9	5.7	5.4

주: 1.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는 일반기술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가정
 2.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비수도권 소재 기업 공제 전망치) 2023년 기준 R&D 세액공제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기업규모별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공제액 전망

- 2023년 신고 기준 R&D 세액공제에서 비수도권 소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 26.6%, 일반법인 7.7% 수준
 - 수도권은 서울·경기·인천,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으로 집계

[표 5] 법인의 R&D 세액공제의 지역별 실적 및 비중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수도권	비수도권	계
중소기업	11,112 (73.4)	4,037 (26.6)	15,150 (100.0)
일반법인	27,760 (92.3)	2,310 (7.7)	30,070 (100.0)

주: ()안은 공제실적의 지역별 비중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- 연도별 R&D 세액공제액 전망에서 기업규모별로 비수도권 소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&D 세액공제액을 전망
 -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공제액 비중을,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일반법인의 비수도권 공제액 비중을 적용

[표 6] 향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2,928	3,112	3,296	3,484	3,672
중견기업	171	182	193	204	215
대기업	431	459	486	513	541
계	3,530	3,753	3,974	4,201	4,428

- (세수효과) 향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R&D 세액공제액 전망치에 기업규모별 공제율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공제율(20%)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기업규모별로 현행 일반기술 R&D에 적용되는 수준인 2~25% 수준으로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추정
 - 일반기술 R&D 세액공제율(%): (중소기업) 25, (중견기업) 8, (대기업) 2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R&D 세액공제 추가분 추계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현행 전망치(A)	2,928	3,112	3,296	3,484	3,672
	추가분(A'=A×20/25)	2,342	2,490	2,637	2,787	2,938
중견기업	현행 전망치(B)	171	182	193	204	215
	추가분(B'=B×20/8)	428	455	481	509	536
대기업	현행 전망치(C)	431	459	486	513	541
	추가분(C'=C×20/2)	4,315	4,587	4,857	5,134	5,412
추가분 합(A'+B'+C')		7,085	7,531	7,976	8,430	8,885

(3) 추계결과

-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R&D 지출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(20%)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는 2026년 7,085억원, 2030년 8,88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,059억원(연평균 3조 3,4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적용(안 제10조제1항)	-7,085	-7,531	-7,976	-8,430	-8,885	-39,907	-7,981

나.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추가공제 적용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 개요)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 구매 등 설비 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제도로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설비투자보다 높은 공

제율을 적용
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’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 -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당기분 12~13%p, 증가분 1%p 우대
 - 일반 투자 대비 당기분 14~15%p, 증가분 1%p 우대

[표 9] 기술별 투자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기술	1	5	10	3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□ (공제실적)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2조 799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1조 8,671억원 수준

-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대부분 법인세(1조 9,763억원)에서 발생하며,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0]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	4,418	1,476	5,576	11,470
신성장·원천기술	29	10	3	42
국가전략기술	8	10	8,233	8,251
계	4,455	1,496	13,812	19,76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1조 8,671억원으로 2023년 대비 12.2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공제율 변화를 반영하고, 향후 공제실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, 향후 동 기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신성장·원천기술 기준으로 적용

－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공제율 변화(%):

(국가전략기술) 중소기업 25 → 12, 중견기업 15 → 6, 대기업 15 → 3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11]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일반>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5,458	5,731	5,983	6,247	6,503
중견기업	1,823	1,914	1,999	2,087	2,172
대기업	6,888	7,233	7,551	7,883	8,207
<신성장·원천기술> (현행 국가전략기술 포함)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42	44	46	48	50
중견기업	18	19	20	20	21
대기업	2,140	2,247	2,346	2,450	2,550
계	16,370	17,188	17,945	18,734	19,502
설비투자 증감률 전망(t-1)	5.8	5.0	4.4	4.4	4.1

주: 1.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는 신성장·원천기술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가정
 2.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비수도권 소재 기업 공제 전망치) 2023년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
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기업규모별
비수도권 소재기업의 공제액 전망

- 2023년 신고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비수도권 소재기업이 차지하
는 비중은 중소기업 47.8%, 일반법인 14.9% 수준
 - 수도권은 서울·경기·인천,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으로 집계

[표 12] 법인의 R&D 세액공제의 지역별 실적 및 비중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수도권	비수도권	계
중소기업	2,327 (52.2)	2,127 (47.8)	4,455 (100.0)
일반법인	13,027 (85.1)	2,281 (14.9)	15,308 (100.0)

주: ()안은 공제실적의 지역별 비중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-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에서 기업규모별로 비수도권 소재기업이
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전망
 -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공제액 비중을,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
일반법인의 비수도권 공제액 비중을 적용

[표 13] 향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일반>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2,607	2,737	2,858	2,983	3,106
중견기업	272	285	298	311	324
대기업	1,026	1,078	1,125	1,174	1,223
<신성장·원천기술> (현행 국가전략기술 포함)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20	21	22	23	24
중견기업	3	3	3	3	3
대기업	319	335	350	365	380
계	4,246	4,459	4,655	4,860	5,059

□ (세수효과) 향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망치에 기술별·기업규모별 공제율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공제율(20%)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2026년(징수기준) 이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일반(1~10%)과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(3~12%)로 구분되어 적용되며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추정

- 일반 투자세액공제율(%): (중소기업) 10, (중견기업) 5, (대기업) 1
- 신성장·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율(%): (중소기업) 12, (중견기업) 6, (대기업) 3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분 추계
(단위: 억원)

<일반>	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현행 전망치(A)	2,607	2,737	2,858	2,983	3,106
	추가분(A'=A×20/10)	5,214	5,474	5,715	5,967	6,211
중견기업	현행 전망치(B)	272	285	298	311	324
	추가분(B'=B×20/5)	1,087	1,141	1,191	1,243	1,294
대기업	현행 전망치(C)	1,026	1,078	1,125	1,174	1,223
	추가분(C'=C×20/1)	20,525	21,551	22,499	23,489	24,452
<신성장·원천기술> (현행 국가전략기술 포함)		2026	2027	2028	2029	2030
중소기업	현행 전망치(D)	20	21	22	23	24
	추가분(D'=D×20/12)	33	35	36	38	40
중견기업	현행 전망치(E)	3	3	3	3	3
	추가분(E'=E×20/6)	9	9	10	10	11
대기업	현행 전망치(F)	319	335	350	365	380
	추가분(F'=F×20/3)	2,126	2,232	2,330	2,433	2,533
추가분 합(G=A'+B'+C'+D'+E'+F')		28,993	30,443	31,782	33,180	34,541
세수효과(G×[1-0.2] ¹⁾)		23,194	24,354	25,426	26,544	27,633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(3) 추계결과

□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(20%)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2조 3,194억원,

2030년 2조 7,63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조 7,151억원(연평균 2조 5,4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추가 적인 공제 적용(안 제24조 제1항제2호)	-23,194	-24,354	-25,426	-26,544	-27,633	-127,151	-25,430

주: 1)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